

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: 1998. 11. 7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8. 11. 9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6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1998. 11. 13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홍건표)

가. 제안이유

- 94년부터 2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기 시작한 체육진흥기금이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99년도에 39백만원만 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면 목표액에 도달함으로 인하여
- 99년부터 20억원의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각종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상 예상되는 미비점을 수정·보완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기금에치은행 명시 : 시금고(안 제2조) (행정자치부 : 기금의 금고예탁 관련 질의회시, 재경 13300-54 98. 1. 20)
-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(안 제4조)
- 이자수입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면서 매회계년도마다 총 이자수입 중 20% 이상을 재적립하게 한 후 원금은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였음(안 제5조)
- 기금을 부적합하게 사용하거나 목적 외의 사용함이 발견될 시 지급정지 또는 취소한 후 반환토록 하였음(안 제7조)
- 기금운용관 변경(체육회 소속직원 → 체육업무담당국장, 주사) (안 제8조)
- 시장이 체육회의 사업운영 상황조사 및 장부를 검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9조)
- 98. 12. 31일까지의 모든 이자수입액은 적립원금화하였음(부칙 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기금을 조성할 때까지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체육회 소속직원이 맡아서 하다가 기금이 조성된 후 기금운용관을 공무원으로 바꾼 사유는?	○ 당초 조례에서는 체육회 소속직원이 기금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리 되었지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육업무담당국장이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바꾸게 되었습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개정안

의안번호	제 68 호
의결년월일	98. 11. 14 (제66회)

제출년월일 : 1998. 11. 7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개정이유

- 94년부터 2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기 시작한 체육진흥기금이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99년도에 39백만원만 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면 목표액에 도달함으로 인하여
- 99년부터 20억원의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각종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상 예상되는 미비점을 수정·보완코자 함

□ 주요골자

- 기금예치은행 명시 : 시금고(안 제2조)
(행정자치부 : 기금의 금고예탁 관련 질의회시, 재경13300-54 98. 1. 20)
-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(안 제4조)
- 이자수입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면서 매회계년도마다 총 이자수입 중 20% 이상을 재적립하게 한 후 원금은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였음(안 제5조)
- 기금을 부적합하게 사용하거나 목적 외의 사용함이 발견될 시 지급정지 또는 취소한 후 반환토록 하였음(안 제7조)

- 기금운용관 변경(체육회 소속직원→체육업무담당국장, 주사)(안 제8조)
- 시장이 체육회의 사업운영 상황조사 및 장부를 검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9조)
- 98. 12. 31일까지의 모든 이자수입액은 적립원금화하였음(부칙 제2항)

개정조례(안) : 불임

관계법령발체서

-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
- 지방자치법 제133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해당없음

기타참고사항 : 해당없음

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개정조례(안)

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천시체육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조성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설치 및 관리) ①시장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·운용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.

③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원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구분하여 예치·관리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시 일반회계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수익금
3. 기타 수입금 등

제4조(기금운용계획) ①부천시체육회장(이하 "체육회장"이라 한다)은 매회계년도 10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
2.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
3.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

- 4.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5조(기금의 사용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한다. 단, 이자수입금으로 사용하되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적립은 연 이자발생액의 20퍼센트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.

- 1.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·개발 및 보급사업
- 2.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복지향상 및 육성을 위한 사업
- 3. 체육회 경상운영사업
- 4. 시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
- 5. 전국, 시·도단위 체육대회와 국제대회(월드컵, 올림픽 등)개최 및 참가사업
- 6. 체육진흥기금의 재적립
- 7. 학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을 위한 사업
- 8. 기타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결산 및 보고) ①체육회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) 시장은 기금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
제8조(회계공무원)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, 기금운용관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며,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담당이다.

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9조(감독)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체육회의 사업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육회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0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.

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적립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적립원금으로 본다.